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393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2201975)	2024.7.1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7.)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8.)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9.)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4.)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9.)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김태년의원 (2202477)	2024.8.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p>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7.) 상정/축조심사</p> <p>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8.) 상정/축조심사</p> <p>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9.) 상정/축조심사</p> <p>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4.) 상정/축조심사</p> <p>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9.) 상정</p> <p>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 (대안반영 폐기)</p> <p>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p>
김성희의원 (2204893)	2024.10.24.	<p>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24.11.2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p> <p>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7.) 상정/축조심사</p> <p>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8.) 상정/축조심사</p> <p>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9.) 상정/축조심사</p> <p>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4.) 상정/축조심사</p> <p>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9.) 상정</p> <p>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 (대안반영 폐기)</p> <p>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p>

김상욱 의원 (2205202)	2024.11.4.	<p>「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28.)</p> <p>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7.) 상정/축조심사</p> <p>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8.) 상정/축조심사</p> <p>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9.) 상정/축조심사</p> <p>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4.) 상정/축조심사</p> <p>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9.) 상정</p> <p>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 (대안반영 폐기)</p> <p>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p>
윤건영 의원 (2205366)	2024.11.7.	<p>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24.11.2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p> <p>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7.) 상정/축조심사</p> <p>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8.) 상정/축조심사</p> <p>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9.) 상정/축조심사</p> <p>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4.) 상정/축조심사</p> <p>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9.) 상정</p> <p>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 (대안반영 폐기)</p>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정부 (2213620)	2025.10.16.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5.11.2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4.)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9.)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12.10.)는 위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부과하고,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연료의 환경오염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등 유상 거래 시 증여의제(안 제7조 제11항제4호 단서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나. 고급주택 취득시 중과대상 기준 개선(안 제13조제5항제3호)

고급주택 취득시 중과대상의 기준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수영장 및 부대시설 요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다.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 · 납부(안 제20조제2항)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중과세액 또는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에 대해 2년간 세율 감면(안 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를 적용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 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의 수탁자 물적납 세의무 부과대상 확대(안 제119조의2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함.

사.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

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신설(안 제142조 제2항라목)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시설 유치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톤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

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안 제146조 제2항 제3호)

화력발전의 연료별 환경오염도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차등하기 위해 일반적인 화력발전은 킬로와트시(kWh)당 0.7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부과함.

3. 부대의견

가.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이 되는 면적과 가액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마련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6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4. 소수의견

가. 시대변화에 따라 고급주택의 기준이 바뀌어가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됨. 그러나, 첫째, 고급주택에 대해 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유지

되는 것이 옳은지 먼저 선행적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음.

둘째, 이번 기준 변경으로 적용되는 대상주택에 대한 통계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이와 같은 이유로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요청하며, 보류 의견을 남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상”을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대가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의3제2항 중 “거래”를 “거래(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시가인정액”을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6제2항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이 아닌 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를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각각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를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가인정액”을 각각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71조제3항제4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3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03조의3제8항 중 “국내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제103조의19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또 는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제1

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 제57조의2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3조의20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만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 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제103조의20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4억 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 원 초과	65억6천만원 +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제103조의23제1항 중 “4개월”을 “4개월(「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개월로 한다)”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5호 전단 중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를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로 한다.

제10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1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

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에서 “미집행”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해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 · 가산금”을 “재산세 · 납부지연가산세”로, “신탁재산으로써”를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으로써”로 한다.

제128조제3항 중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을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산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28조제4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계산식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42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기물매립시설(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소유권, 공동수면매

립면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간척지 등에 설치된 매립 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폐기물”이라 한다) 제143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제144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

제146조제2항제3호 중 “0.6원”을 “0.7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한다.

제14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기물: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

제147조제2항 중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9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및 폐기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제3호,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등 취득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 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골프장업 및 사실상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고급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급주택을 취득(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 경우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인 등이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이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담배소비세 납세의무에 관한 유효기간)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7조(담배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거주자의 출국 시 주식 등 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9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

제2항제5호 및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례) 제128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제143조제2호라목, 제144조제2호라목,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p>가. ~ 라. (생 략)</p> <p>⑫ ~ ⑯ (생 략)</p> <p>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생 략)</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 계인 간의 <u>거래</u>로 그 취득에 대 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 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 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시가인 정액</u>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 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생 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법인이 아닌</u>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 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p>	<p><u>외한다.</u></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⑫ ~ ⑯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거래(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 는 경우는 제외한다)</u>----- ----- ----- ----- <u>시가인정 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u>----- ----- ----- -----</p>
---	---

가액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③ · ④ (생 략)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중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이 아닌 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등록(시설을 중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

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

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

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

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삽 제

2. (생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 5. (생략)

취득하는 경우에 -----

-----.

2.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p><u>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u></p>	
<p>② (생 략)</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 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 까지 취득세를 <u>시가인정액</u>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u>시가 인정액</u>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시가인정액</u> 또는 <u>시가표준액</u>----- ----- <u>시가</u> <u>인정액</u> 또는 <u>시가표준액</u>-----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 -----.</p>
<p>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p>	<p>제52조(세율) ① ----- -----.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p>
<p>1. ~ 3. (생 략)</p> <p>② (생 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1조(납입) ① · ② (생 략)</p> <p>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p>	<p>제71조(납입)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p>	<p>----- -----.</p>
<p>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p>	<p>1. ----- --</p>
<p>가. (생 략)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p>	<p>가. (현행과 같음) 나. ----- ----- ----- --. <단서 삭제></p>
<p>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p>	<p>2. ----- --</p>
<p>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p>	<p>가.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 --. ----- ----- -----</p>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전 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설〉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fiv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letter formation.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
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 제
57조의2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
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
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
서 공제하는 금액을 이 조 제1
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
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으로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

-----.

제103조의20(세율) ① -----

-----.

1. -----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2. -----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8천만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6천만원 + (3천 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4억 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6천만원 + (3천 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② (생략)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 4.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

4개월(「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5개월로 한다)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1. ~ 4. (현행과 같음)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 8. (생략)

③ (생 략)

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1. ~ 3. (생 략)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

6.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8조(납세자) -----

1. ~ 3. (혁행과 같음)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

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생 략)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적항의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현행과 같음)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

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콜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에서 “미집행”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신 설>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 (해당 신청을 통해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세액 부기간	신고납 부기간	계산식	연세액 부기간	신고납 부기간	계산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 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 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 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 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 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 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자율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 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 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자율

1. ~ 3. (생략)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계산식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⑤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계산식

⑤ (현행과 같음)

<p>제142조(과세대상)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 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다. (생 략) <p><u><신 설></u></p> <p>3. (생 략)</p> <p>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142조(과세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 -----.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폐기물매립시설(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소유권,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간척지 등에 설치된 매립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폐기물”이라 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제143조(납세의무자) ----- ----- -----.</p>
---	---

<p>1. (생 략)</p> <p>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자</p> <p>가. ~ 다. (생 략)</p> <p><u><신 설></u></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 <u>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u> <u>물을 배출하는 자</u></p>
<p>3. (생 략)</p> <p>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p> <p>1. (생 략)</p> <p>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p> <p>가. ~ 다. (생 략)</p> <p><u><신 설></u></p>	<p>3. (현행과 같음)</p> <p>제144조(납세지)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 <u>의 소재지</u></p>
<p>3. (생 략)</p> <p>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 략)</p> <p>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 략)</p>	<p>3. (현행과 같음)</p> <p>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 시(kWh)당 <u>0.6원</u> <단서 신설></p>	<p><신 설></p>	<p>3. ----- ----- 0.7원.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 시(kWh)당 0.6원으로 한다.</p>
<p>③ ~ ⑤ (생 략)</p>	<p>제147조(부과·징수) ① (생 략)</p>	<p>4. 폐기물: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p>
<p>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u>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u>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p>	<p>③ ~ ⑥ (생 략)</p>	<p>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7조(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9조의2 ----- ----- -----.</u></p>
<p>⑦ 제6항의 경우에 <u>컨테이너</u>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p>		<p>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u>컨테이너 및 폐기물----- ----- -----.</u></p>